

제 호

보물 지정서 국가민속문화유산

명 칭

수 량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/
제26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보물로 / 국가민속문화유산
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

소유자	주 소	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	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	기록자

(변 경 사 항)

소유자	주 소	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	변 경 연 월 일	기록자

주의사항

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
- 1.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- 2.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
- 3.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

※ 1쪽 왼쪽 상단의 ‘제 호’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.(표기예시: 제2022-001호)